

광천동 '시민아파트' 구체적 보존 논의 지지부진

들불야학 근거지·윤상원 열사 거주 광천동재개발구역 내 '보존' 결정 '역사공원' 조성 등 실무협의 전무 "세부계획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80년 5월 당시 윤상원 열사가 활동했던 들불야학의 옛터인 광주 서구 광천시민아파트와 광천동 성당(왼쪽 위) 일대. 나건호 기자

광주 광천동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들불야학 근거지 '시민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 방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6월까지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면 일대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보존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광주 서구와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광천동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가 지난 2월 개최됐다. 총회 안건에는 시민아파트 보존을 위한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총 7개의 안건이 올랐다. 시민아파트를 보존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구역 변경안을 의결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아파트는 1971년 6·25 피난민이 모여 살던 판자촌 일대에 지어진 광주 최초의 연립아파트다. 광주·전남 최초 노동야학인 들불야학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중언론 '투사회보'를 제작했던 윤상원·박용준 열사가 살았으며,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와 김영철 5·18 시민군 기획실장도 이곳에서 거주하며 활동을 펼쳤다.

당초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철거될 예정이었던 시민아파트는 지난 2021년 광주시·서구·전주교광주대교구·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4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존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간신히 철거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 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 등 실질적인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시민아파트가, 나, 다 3개동 중 나동을 보존해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해 전시관 등으로 만든다는 '큰 틀'만 잡혔지, 관리 주체 및 역사공원

조성 등 기본 구상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들불야학이 시작됐던 광천동성당 교리실 역시 '복원'하는 방향으로 최초 협의된 후 진전이 없다. 이 탓에 정비계획 변경이라는 1차 관문을 넘었음에도 난관은 겹겹산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재개발조합 측이 정비구역을 기존 철거 안에서 보존안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대한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가 지난 2월 이뤄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실무협의체 운영 등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

시민아파트 보존안 반영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조합 측은 정기총회 직후 서구에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관련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에는 정비계획 변경 지정고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단계를 거치고 착공에 들어간다. 서구는 이 모든 단계를 완료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 입안 검토 과정에서 시가 주관하는 4자 실무협의

체를 통해 시민아파트 구체적 보존 및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절차는 정비구역 이주·철거와 동시 추진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1월 개시된 이주 기한은 6월 3일까지로 시간은 넉넉지 않은 실정이다. 보존안이 최종 승인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사이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이주 기한 안에 모든 주민의 이주가 끝났건 어렵다. 미이주세대에 대한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이주율은 약 60%"라며 "재개발 사업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아파트 보존이 '최종 확정'이라고 볼 수 없다.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비 계획을 변경하려고 진행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루빨리 공식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시민아파트 보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오월단체 관계자는 "실무협의체까지 구성됐는데 역사 공간을 보존하는 중대한 일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며 "본격적인 철거, 착공에 들어서기 전에 세부적인 보존 계획을 만들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 42만여㎡에 아파트 53개 동, 5611가구가 입주하는 광주 최대 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으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jubu.kang@jnilbo.com

광주 아이돌보미 근로자 지위 인정

"야간수당 등 지급" 제기 대법 "근로자 인정" 판단

광주 지역 아이돌보미들이 오랜 소송 끝에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임금' 소송 2건에서 원고 중 150명에게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원고들은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2013~2016년 사이 근무한 아이돌보미다.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된 피고들은 광주 지자체로부터 아이돌봄 사업을 위탁받아 원고들을 고용했다.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원고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법정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이돌보미들도 피고 측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했다.

2심 법원은 2019년 6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운영권한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고들은 중속적인 지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해당 소송들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시켰다.

다시 재판을 맡은 2심 법원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아이돌보미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서비스기관들은 실질적인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원고들과 근로계

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피고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소정근로일수를 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실제 근무이력 등을 토대로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송민섭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